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35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(과태료 부과처분 후의 위반행위로 한정한다)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행위의 횟수를 계산한다.

나.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스스로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
		1차 위반	2차 위반 이상
가. 협동조합등 또는 협동조합 연합회등이 법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119조 제1항제1호	100	200
나. 법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문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한 경우	법 제119조 제1항제2호	100	200
다. 협동조합연합회등이 법 제3	법 제119조	100	200

조제5항에 따른 명칭의 사용 금지 또는 수정 명령을 따르 지 않은 경우	제1항제3호			
라.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 합회등이 법 제22조제2항(법 제76조·제91조·제115조 제1항 및 제115조의5제1 항·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조합원등 1인의 출자좌수 제 한을 초과하게 한 경우	법 제119조 제2항제1호	100	200	
마. 협동조합이 법 제22조의2제 2항·제3항을 위반하여 우선 출자의 총액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	법 제119조 제2항제2호	100	200	
바. 협동조합등이 법 제23조제1 항(법 제9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의결권·선거권에 차 등을 둔 경우	법 제119조 제2항제3호	100	200	
사.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 합회등이 법 제46조, 제81조 및 제95조(법 제115조제2항 및 제115조의7에 따라 준용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 반하여 조합원등이 아닌 자에 게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 합회등의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	법 제119조 제2항제4호	100	200	

아.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신고·등기를 게을리한 경우	법 제119조 제3항제1호	50	100
자.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법 제49조제2항(법 제82조 및 제115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및 법 제96조제2항(법 제1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115조의8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서류 비치를 게을리한 경우	법 제119조 제3항제2호	50	100
차.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법 제49조(법 제82조 및 제115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법 제49조의2(법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법 제96조(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및 법 제96조의2(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경우	법 제119조 제3항제3호	50	100

카.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	법 제119조 제3항제4호	50	100
타.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119조 제3항제5호	50	100
파.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이 법 제94조를 위반하여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의 총사업한도, 이자율, 대출한도, 상호부조의 범위, 상호부조금,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을 초과하게 한 경우	법 제119조 제2항제5호	100	200